

당진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25호 2020. 08. 14.(금)

고 시

- 제2020-178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제2020-183호 도로명주소 고시..... 6
- 제2020-1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 고시..... 8
- 제2020-188호 리치캐슬 주민합의체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9

공 고

- 제2020-1478호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제2020-1498호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제2020-1540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
- 제2020-1559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43
- 제2020-1581호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변경)..... 56

회 랑						
-----	--	--	--	--	--	--

당진시 고시 제2020-178호**당진 도시관리계획(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048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당진시장

1. 당진 도시관리계획(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당진 도시관리계획(대덕·수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당진시청(도시재생과 041-350-44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상업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기정				변경			
		가구면적	획지			가구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계		17,993.8	-	-	17,993.8	17,993.8	-	-	17,993.8
	1	3,450.0	-1	수청동 1031 외 2필지 일원	3,450.0	3,450.0	-1	수청동1031 외 2필지 일원	3,450.0
	2	2,372.0	-1	수청동 1034	1,185.9	2,372.0	-1	수청동 1034	1,185.9
			-2	수청동 1035	1,186.1		-2	수청동 1035	1,186.1
	3	2,129.5	-1	수청동 1037	1,065.0	2,129.5	-1	수청동 1037	1,065.0
			-2	수청동 1036	1,064.5		-2	수청동 1036	1,064.5
	4	1,937.8	-1	수청동 1041 외 1필지	1,937.8	1,937.8	-1	수청동 1041 외 1필지	1,937.8
	5	2,082.5	-1	수청동 1043	694.3	2,082.5	-1	수청동 1043	694.3
			-2	수청동 1044	694.5		-2	수청동 1044	694.5
			-3	수청동 1045	693.7		-3	수청동 1045	693.7
	6	3,792.7	-1	수청동 1046	802.9	3,792.7	-1	수청동 1046	802.9
			-2	수청동 1047	802.9		-2	수청동 1047	802.9
			-3	수청동 1048	991.9		-3	수청동 1048 외 1필지	1,576.7
			-4	수청동 1049	584.8				
			-5	수청동 1050	610.2		-5	수청동 1050	610.2
	7	2,229.3	-1	수청동 1053	742.0	2,229.3	-1	수청동 1053	742.0
			-2	수청동 1052	743.6		-2	수청동 1052	743.6
			-3	수청동 1051	743.7		-3	수청동 1051	743.7

나. 그 외 가구 및 획지: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 - 기정 】



대덕수청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수청동 1048, 1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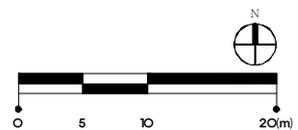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 계획구역
- 사업대상지
- 획지분할선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선
- 1 가구번호
- 1 획지번호
- 건축한계선
- 1층벽면지정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 1층부 아케이드설치구간

건축물 용도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상업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당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명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광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재미공원, 장애 시설, 군사시설, 병원소, 기타 법규의 개정· 교류·보전등에 쓰이는 시설, 옥외광고물설치된 글드연습장

용도	
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최저높이



【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 - 변경 】



**대덕수청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수청동 1048, 1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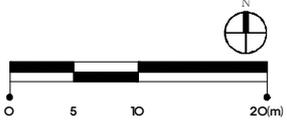
-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대상지
 - 획지분할선
 -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선
 - 1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건축한계선
 - 1층벽면지정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보행통로
 - 1층부 아케이드설치구간

건축물 용도분류표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상업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당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장교사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군사시설, 발전소, 기타 법외의 경쟁, 교육, 보건등에 쓰이는 시설, 유역범람원천지인 원프린업장

용 도

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최저높이



당진시 고시 제2020-18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3.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692 외 7 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8. 3.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8/3〉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행정동 403-1	역천로 692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09-08-25	하천명칭 활용
2	송산면 금암리 45-4	송산면 당산2로 80-36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 명칭인 당산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신평면 금천리 68	신평면 새마지로 162-55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새마지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신평면 도성리 305-2	신평면 셋터로 118-11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셋터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신평면 한정리 26-3	신평면 셋터로 250-36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셋터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용연동 153-8	발산1길 30-126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발산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송악읍 복운리 209-1	송악읍 복운1길 224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8	송악읍 가교리 260-6	송악읍 소사동길 76-61	2020-08-0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소사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신평면 거산리 342-1	신평면 관곡길 16-37	2012-01-01	단순변경 (멸실 후 신축 기존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관곡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당진시 고시 제2020-1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현대제철(주)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2. 공사내용 : 현대제철 투기장 호안조성공사에 따른 어촌계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곡선착장 보강공사(T.T.P 보강)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 9. 1. ~ 2020. 10. 31.
4. 실시계획 신고수리일자 : 2020. 8. 10.
5. 다른 법(률)의 의제 또는 협의 사항 : 협의조건 생략
 -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2020. 8. 14.

충청남도 당진시장



당진시 고시 제2020-188호

리치캐슬 주민합의체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0.01.16. 주민합의체 구성된 당진시 읍내동 671-1외 7필지 리치캐슬 주민합의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 8. 11.

당진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리치캐슬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당진시 읍내동 671-1번지 외7필지
3. 사업의 면적 : 7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명칭 : 리치캐슬 주민합의체(대표자 임현희)
 - 나.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고 화랑로 510 401동
5.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5일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 7. 30.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	구분	세대수	건축주
리치캐슬 가동	127.385㎡	521.63㎡	다세대주택	5층	임대	8	윤현*
리치캐슬 가동	121.695㎡	491.29㎡	다세대주택	5층	임대	8	이왕*
리치캐슬 나동	135.625㎡	553.75㎡	다세대주택	5층	임대	8	임현*
리치캐슬 나동	122.480㎡	496.77㎡	다세대주택	5층	임대	8	박미*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 수								
	계	57.48㎡	51.39㎡	53.34㎡	57.89㎡	59.26㎡	59.82㎡	50.38	60.02
계	32	4	4	4	4	4	4	4	4
임대	32	4	4	4	4	4	4	4	4

당진시 공고 제2020-1478호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제외 되어 있어,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조항조정 및 심의대상 확대 (안 제5조제1항4)
- 나. 일부 용어에 대한 언어 순화 반영 (안 제5조제1항4)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산림녹지과(공원조성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전 화: 041-350-4210

팩스번호: 041-350-4219

E-mail: nam7369@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제외 되어 있어,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조항조정 및 심의대상 확대 (안 제5조제1항4)
- 나. 일부 용어에 대한 언어 순화 반영 (안 제5조제1항4)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승인사항(흉고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일 경우만 해당한다)”을 “승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제거하는 경우
- 나.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경우(단, 옮겨심기, 보식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u>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 3. (생략)</p> <p>4. <u>제5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흉고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일 경우만 해당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5. (생략)</p> <p>② ~ ⑧ (생략)</p>	<p>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6조-----</u></p> <p>----- <u>승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u></p> <p><u>가.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제거하는 경우</u></p> <p><u>나.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경우(단, 옮겨심기, 보식은 제외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당진시 공고 제2020-1498호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3일

당진시장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문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법령명 및 조문 정비
- 나. 농작물 피해보상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범위 규정(안 제3조제1항)
 - 멸종위기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
- 다. 피해보상금 기준 문구 정비(안 제5조제3항)
 -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내용 분리·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전 화: 041-360-6560

팩스번호: 041-360-6569

E-mail: thunder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문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법령명 및 조문 정비
- 나. 농작물 피해보상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범위 규정(안 제3조제1항)
 - 멸종위기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
- 다. 피해보상금 기준 문구 정비(안 제5조제3항)
 -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내용 분리·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체크리스트 종료(여성가족과-14296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입법예고(. .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지원부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에 피해보상한 경작지에 같은해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피해농경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경우
6. 총 피해산정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농작물 등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 리·통장,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기준 등)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당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획 포상금 및 구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상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부상야생

동물을 구조하여 야생동물 의료기관 등에 인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유해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제9조(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의 비치) 관계공무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농지원부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p> <p>4. (생 략)</p> <p>5.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 ----- ----- -----.</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피해보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제3조(피해보상) ① ----- -----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p> <p>② ----- -----</p>

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9조(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업인 등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 ----- 등에게 -----
----- 시설설치 비용 및 -----
----- 예산의 범위에서 -----.

< 관 계 법 령 >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동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

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3조(피해보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액 : 연 평균 5천만원 미만
- 비용 추계 기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함

(단위:천원)

연도별 예산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예산액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4. 작성자 :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당진시 공고 제2020-1540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당진시장

1. 조례명 : 당진시 건축 조례

2.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과 공개 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 나.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 다.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안 제33조의2)
-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8. 10. ~ 2020. 8. 31.(21일간)

6. 의견제출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건축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 화: 041)350-4461

- 팩 스: 041)350-4509

- 이메일: kimdp@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과 공개 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 나.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 다.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안 제33조의2)
-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개선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2020. 8. 10. ~ 8. 31.)결과 : 20일 이상 입법예고/ 초일 불산입

조례 제 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용”을 “(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영·시행규칙 또는”을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도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조립식 구조에 한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2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 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과하며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조례로 정하는 지역</u>”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u>역사문화미관지구</u>로써 <u>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u>을 말한다.</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공지 또는 <u>도로</u>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생략)</p>	<p>제23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u> ----- ----- ----- ----- ----- 5. (현행과 같음)</p>
<p><신설></p>	<p>6. <u>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조립식 구조에 한한다)</u></p>
<p>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하 생략)</p>	<p>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제14항----- (이하 현행과 같음)</p>
<p>② ~ ⑥ (생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p> <p>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 중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단, 한동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을 경우 영업장 면적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300m² 이상인 것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500m² 이상인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것 	<p><삭 제></p>
--	--------------------

<p>② <u>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28조(건축지도원) ① (생략) 1. ~ 3. (생략) 4. 「<u>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u>」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p>	<p>제28조(건축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u>」 -- ----- -----</p>
<p>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② (생략) ③ <u>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6. (생략) ④·⑤ (생략) <신설></p>	<p>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27조의2제3항에</u> ----- ----- -----. 1.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u>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 공</u></p>

	<p><u>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 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u>제33조의2(실내건축)</u></p> <p><u>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다중이용 건축물</u> <u>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u> <p><u>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u></p>
<p>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u>85제곱미터</u>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이하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 <u>60제곱미터</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80조제5항 단서</u>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u>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u>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p>	<p>④ <u>법 제80조제5항</u> ----- ----- ----- <u>부과한다.</u></p>
---	--

당진시 공고 제2020-1559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당진시장

1. 조례명 :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2. 제안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2020.4.28.제정, 2020.5.1.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방법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3조)
- 나.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라.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6조)
-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규정(안 제7조)
- 바. 해체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아.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1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8. 11. ~ 2020. 8. 31.(20일간)

6. 의견제출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건축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 화: 041)350-4461
 - 팩 스: 041)350-4509
 - 이메일: kimdp@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2020.4.28.제정, 2020.5.1.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방법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3조)
- 나.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라.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6조)
-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규정(안 제7조)
- 바. 해체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아.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0년 7월중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2020년 7월중
 -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020년 8월중
 -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년 9월중
 - 5) 시의회 상정 및 심의 : 2020년 10월중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간 건축물을 사용 또는 정비하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
 -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다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국내외 장기출장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국내외 장기출장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당진시 공고 제2020-1581호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변경)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변경(개최일시)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8.

당진시장

1. 공청회 개최목적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당초: 2020. 08. 27. (목) 15:00, 변경: 2020. 09. 01. (화) 15:30

나. 장 소: 당진시 실내체육관(고대종합운동장)

3.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개요

가. 목표연도: 2035년

나. 계획면적: 704.43km² (당진시 행정구역 전역)

다. 계획내용: 당진시 미래상 제시, 인구지표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구분, 토지이용 계획 및 부문별계획 수립 등

4. 코로나19 관련 회의 참석 시 준수사항

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가래,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 불가

나. 참석 시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참석 불가)

다. 생활속 거리두기 좌석배치로 인해 회의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청회 이후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2020. 9. 15일(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 까지 당진 시청 도시재생과(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은 당직실)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T: 041-350-441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